

##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

김경미\*

— <차 례> —

1. 서론
2. 18세기 예담론에서 언급되는 ‘친영’
3. 친영의 시행 여부와 친정, 시집과의 거리
4. 여성이 재현한 시집살이와 친정, 시집의 거리 - <즈기록>을 중심으로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 나는 18세기의 대표적인 예론을 통해 당시 사대부들이 친영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살피고, 이것이 실제 여성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여성을 대상으로 쓴 행장, 묘지명, 제문과 여성의 자전적 기록을 통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 규범은 여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싶어 했고, 또 여성 자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친정과 시집의 관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당시 예론을 전개한 학자들은 왕실을 제외하면 친영이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친영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실제 결혼한 뒤 신혼부부가 여자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여자만 계속 친정살이를 계속한 경우들이 많이 보인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훈적 기록물에서는 여성의 삶을 시집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한 남성 사대부들은 교훈서를 통해 시집에 순종하는 며느리를 만들려는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0110).”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훈육을 계속하고, 이를 여성의 규범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18세기까지도 종법에 입각한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완전히 정착했다기보다는 양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18세기 여성사가 도달한 지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논의는 주로 양반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개별적인 사례연구가 보다 더 축적된 뒤에 18세기적인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주자가례, 친영, 행장, 묘지명, 제문, 시집, 친정, 18세기

## 1. 서론

남성 중심의 역사 기술에서 구획한 시대 구분이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해 본다면, 다시 말해 여성사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한다면 시대 구분의 중요한 사건들, 혹은 계기들은 무엇일까? 근래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사 연구는 종법 중심의 가부장제의 정착과 여성 지위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종법 중심의 가부장제의 정착을 여성의 삶과 관련시켜 보면 삶의 중심이 친정보다는 시집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출가의인’ 담론이나 ‘열녀’ 담론은 바로 이러한 종법 중심의 가부장제 정착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성의 삶을 종속적인 지위에 놓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 여성사의 관점에서 볼 때 『주자가례』에서 제시한 혼례 형식은 여성의 지위 변화를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주자가례』식 혼례의 핵심은 친영에 있다. 그것은 전통적인 혼숙인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과 대치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혼숙을 변화시키고 친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행된 것들이 전통적인 서류부가혼에 친영을 결합한 반친영(半親迎), 가관친영(假館親迎) 등이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혼례에 대한 연

구가 주로 서류부가혼의 변화와 친영례의 정착 과정에 집중해 왔던 것도 친영의 시행이 여성과 남성의 지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sup>1)</sup>

반친영이나 가관친영은 ‘남자가 여자에 우선한다(男先於女)’라는 친영의 의의를 살리면서 동시에 속례를 따르는 것으로 『주자가례』를 의식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친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시기는 16~17세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혼례의 핵심이 친영이며, 혼례를 할 때는 친영을 시행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요구와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혼례에 대한 초창기의 연구에서는 17세기에 이르러 친영이 정착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반친영, 가관친영 등으로 변형하면서 친영의 의의를 살리고자 했으나 17세기까지도 친영례는 정착하지 못했으며, 이는 조선후기 혼속에 『주자가례』의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sup>2)</sup> 물론 『주자가례』의 영향이 점점해 간다는 견해가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sup>3)</sup>

필자도 17세기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여성 대상 행장, 묘지명, 제문들을 읽으면서 조선 여성들의 삶이 시집을 중심으로만 전개되지 않았다는 점, 친정과의 유대가 긴밀하다는 점 등의 사실과 친영의 정착 여부를 어떻게 관련지어 생각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1) 손진태,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1933, 이순구,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한국사』 31, 1998, 장병인,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 『역사와 현실』 58, 2005, 김경미,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 『동양고전연구』 25, 2006, 장병인,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 행태」, 『朝鮮時代史學報』 45, 2008

2) 장병인, 2008, pp.255-257.

3) 김소은, 「18세기 영남 사족의 일상과 생활의례(Ⅰ)」, 『사학연구』 88, 2007, pp.185-228.

사대부들이 예론을 전개하면서 이상적인 형태로서 친영을 핵심에 놓는 것과 실제 혼례를 시행하는 것 사이에 거리가 존재했음을 발견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특히 혼례의 경우 상대 가문과의 관계, 지리적 거리, 상대 가문의 예식(禮式)이나 형편에 따라 혼례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집안에서 맏딸과 둘째딸의 혼례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친영을 볼 때는 지향하는 혼례 방식과 현실의 거리를 같이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글은 여성사의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로 친영제의 정착에 주목한다. 친영은 혼례 과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친영은 형식만의 문제는 아니다. 친영이 정착되었다는 것은 결혼한 여성이 결혼 후 친정을 떠나 시집에서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18세기에는 대표적인 예서를 통해 친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살피고, 이것이 실제 여성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여성을 대상으로 쓴 행장, 묘지명, 제문과 여성 자신이 기록한 삶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 규범은 여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싶어 했고, 또 여성 자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했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 2. 18세기 예담론에서 언급되는 ‘친영’

18세기에 찬술되고 19세기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조선의 대표적 의례서인 이재(李穡 1680~1746)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주자가례』를 준용하는 쪽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혼례 절차를 다룬 뒤 친영과 관련하여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다.

살피건대, 옛날에 혼인에는 반드시 친영을 했는데 오늘의 세속에는 행하는 이가 적으니, 대체로 예교가 해이해져서 그렇다. 자사(子思) 말씀하시되, 군자의 도는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했거늘, 혼례하는 처음부터 예로써 서로 따르지 않는다면, 첫출발을 바른 도에 견주어 과연 어떠하겠는가. 만약 옛것을 좋아하는 군자라면 스스로 마땅한 의례대로 해야 할 것이다.<sup>4)</sup>

여기서 말하는 옛날이 언제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자료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당대에 친영을 실행하는 이가 적었다는 사실이다. 영조도 당시 혼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친영이 행해지지 않다고 지적을 한 것에서도 보듯 친영이 사대부가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의례였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이처럼 18세기에도 친영이 여전히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18세기의 대표적인 학자라 할 수 있는 성호 이익(1681~1763)의 『성호선생예식(星湖先生禮式)』은 그의 조카 이병휴(李秉休 1710~1776)가 엮은 것으로 성호 집안에서 실제로 행한 예식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혼례 부분 중 「가녀의(嫁女儀)」는 딸을 이수광의 6대손 이극성에게 시집보낼 때, 「취부의(娶婦儀)」는 손자 이구환을 장가보낼 때 지은 것인데 여기서 성호는 친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혼인을 할 때 친영을 하는 것은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두 집안이 반드시 의견이 같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거리가 멀어서 사관(舍館)을 빌려 들고 어른과 젊은이가 오가자면 일의 형편상 매우 불편한 점이 있다. 또 맹자(孟子)는, ‘친영해야 아내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친영하지 않고는 아내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사혼례에는

4) 이재, 국역 사례편람 권2, 우봉이씨대종회, p.66.

5) 김경미,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 동양고전연구』 25, 2006, p.284.

또 친영하지 않는 예(例)가 있으니, 옛사람들도 역시 일의 형편에 따라 편의대로 대처했던 것이다. 『가례』에 의거하면, 준비하고 방을 마련하는 것은 여자 집에서 하는 일이고, 납폐와 전안은 모두 남자가 먼저 하는 뜻이다. 그러나 우선 속례(俗例)에 따라 여자 집에서 성례(成禮)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크게 해롭지는 않겠다. 다만 의리상으로 보아 크게 배치되는 것은 비록 대중들이 하는 것에 어긋나더라도 따를 수 없겠다.<sup>6)</sup>

성호는 여기서 친영을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로 두 집안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가관친영도 실제로 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맹자도 반드시 친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 적 없다는 점, 옛 사람들도 형편에 따라 편의대로 했다는 점 등을 들고 여자 집에서 성례하는 것도 크게 해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성호는 친영의 의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속례를 따르는 것도 무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호의 제자인 순암 안정복(1712~1791)은 성호의 견해를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순암은 친영이란 몸소 맞이하는 것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하는 뜻이라고 밝힌 뒤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영의 예를 행하지 않는데 그 풍속은 오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후한서』 「고구려전」에 “혼인을 하면 모두 신부의 집으로 가서 자식을 낳아 다 자란 뒤에 돌아온다”고 한 것을 인용하고 지금 세속에서 예를 신부 집에서 행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이라고 하였다.<sup>7)</sup> 이어서 친영이 행하기 어려운 것임을 이렇

6) 이익, 「嫁女儀」 禮式, 이대도서관소장본, 이 내용은 星湖先生全集 권48, 雜著, 한국문집총간 199, p.374에도 실려 있다. “婚姻之有親迎古也. 然兩家未必意同. 況居遠借館, 長少搬移, 事勢有不便者. 且孟子答親迎得妻之間, 不會道不迎不得. 士婚禮又有不親迎之例, 則古之人亦或有隨事方便委曲以處者矣. 據家禮張陳鋪房, 卽女家事, 而納幣奠鴈則男先之義也. 姑從俗例, 成禮於女家, 抑未爲大害. 惟甚背於義者, 雖違衆不可從.”

게 이야기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처가가 멀면 사관(舍館)을 빌려서 행례하여야 한다는 말을 주자가 했으니,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예(禮)로 보아서는 당연히 친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는 형편이 가난하여 의례 물품을 갖추기가 어려운 것이 참으로 스승의 말씀과 같다. 같은 고장에 산다면 당연히 예에 정한 대로 해야 하겠다. 예는 간이한 데 바탕을 두고 있으니 시행하기 어려운 것을 보지 못했다. 더구나 사는 형편에 따라 적절히 한다고 했음이었는가. 마땅히 그 의절(儀節)을 지키되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보기 좋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지금 시속에서는 궁가(宮家)만이 당일엔 친영하는데, 의문(儀文)이 옛스럽지 않고 사치스러운 경비가 또한 많다. 사인(士人)들의 집에서 이를 부러워하며 흉내 내려 하지만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다.<sup>8)</sup>

안정복은 당시 사람들이 혼례에 대해 데면데면 친영에 대해서는 도시 사람들은 지킬 수 있지만 시골 같이 멀면 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 다음은 윤장(尹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혼례의 친영 문제에 대하여는 하신 말씀이 옳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 사람들 말이지 시골같이 길이 멀면 함께 데리고 왕래할 수가 없으니, 옛 분들이 친영하지 않은 것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

7) 안정복, 『순암선생문집 권14, 「혼례작의, 무인년 사위 권일신을 맞을 때 정한 것(婚禮酌宜 戊寅女婿權日身時所定)」, 『한국문집총간 230, p.73.

8) 안정복, 『순암선생문집 권14, 「혼례작의(婚禮酌宜)」, 『한국문집총간 230, p.73, “按妻家遠, 則借館行禮之說, 朱子言之, 則勿論遠近, 禮當親迎. 而東俗貧窶, 儀物難備, 誠如師說. 若同居一鄉, 自當依禮, 禮本簡易, 未見難行. 况云貧富隨宜乎. 當遵其儀節, 蠲省浮費, 勿爲觀美可也. 今俗惟宮家當日親迎, 而儀文不古, 侈費又多. 士人家慕效而不可及, 故因以不行, 惜哉.”

입니다. 한탄스러운 것은 지금 시속이 혼례에 대해 너무 데면데면한 것입니다. 의혼(議婚) 초기부터 구체적인 서신 왕래도 없이 남이 하는 대로 연명(年命)을 적은 사주(四柱)나 보낸다면 대례(大禮)가 처음부터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람을 보낼 때 옛날 납채(納采)하는 식으로 하고, 겸하여 옛날의 문명(問名)처럼 규수 쪽에도 청하며, 또 납폐(納幣) 서한 가운데에 납길(納吉)·납징(納徵)·청기(請期) 절차까지 곁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는 지금 풍속을 따르면서도 옛 예(禮)는 예대로 지켜 한 가문의 사규(私規)로 삼아볼까 하는 뜻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sup>9)</sup>

성호 이익이나 순암 안정복이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이들의 경제적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견해들은 『주자가례』에서 말한 친영을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실제로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적어도 17세기에는 사대부들 가운데 『주자가례』에 의거해 가관친영을 시행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물론 이때 가관친영의 실제 절차에는 속례의 흔적이 짙게 남아있었으며, 가관친영이 형식적인 데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면 친영의 한 유형으로 가관친영을 한 뒤에 신혼부부가 돌아가는 곳은 주로 신부집이었던 것이다.<sup>10)</sup>

이는 혼서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17세기 이후 중국 혼서식이 조선 혼서식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이는 모두 『주자가례』의 이상을 현실 속

9) 안정복, 순암선생문집 권3, 「소남 윤장에게 보냄(與邵南尹丈書)」, 한국문집총간 229, p. 392. “婚禮親迎, 下教誠然, 鄙意亦嘗如是. 是蓋都人士之禮, 若鄉里遠, 則搬挈往來, 勢有不及, 古人之不親迎者, 殆或以是也. 竊歎世俗於婚禮, 太涉沽畧. 議婚之初, 泛然以四柱年命投送, 無書啓往來之事, 大禮之始, 慢忽殆甚, 故欲於送命之時, 依古納采, 兼請女命, 依古問名, 又於納幣書中, 兼舉納吉納徵請期之節. 欲循今之俗而遵古之禮, 以爲一家之私規, 非謂此十分當然也.”

10) 장병인, 2008, pp.231-232.

에서 실현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한결같이 가례 혼서식이 변형되고 있었다는 점은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은 일정 부분 현실과의 타협을 피할 수 없었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당시 조선의 혼속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sup>11)</sup> 것이다.

### 3. 친영의 시행 여부와 친정, 시집과의 거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8세기에 와서도 비용이나 거리 문제로 친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성호나 순암은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형편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성호나 순암의 이러한 선택은 그들의 경제적 위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시의 추세를 어느 정도는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친영제의 정착은 『주자가례』식 혼례가 정착되는 것으로 결혼 뒤 여성이 친정보다는 시집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유교 가부장제가 강화된 현상 중의 하나로 해석되어 왔다. 그렇다면 18세기 예담론에서 친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18세기에 와서 가부장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올바른 가설인가? 둘째, 친영의 정착 여부와 가부장제의 강화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가? 셋째, 친영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친영이 표방한바 남자가 여자에 우선한다는 원리는 지켜

11) 김혁, 「조선시대 혼서의 서식 변화를 통해서 본 혼례의 양상」, 영남학 13호, 2008. p.536.

진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 장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장, 묘지명, 제문 등 여성생활사 자료에서 친정과 시집의 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행장, 묘지명, 제문 등은 사람이 죽은 뒤에 씌어진 것으로 죽은 이에 대한 애도와 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며, 인물에 대한 평가도 유교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규범적인 글이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을 모두 그대로 준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글들은 생애에서 일어났던 사실들, 여성들에게 요구했던 규범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결혼한 뒤에도 친정 가까이에 살거나 친정에서 계속 지냈다는 기록들이 18세기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김창흡이 쓴 <청풍 김씨 묘지명>의 주인공 김씨(1666~1707)는 한 성부좌윤을 지낸 김석익의 딸인데 결혼한 뒤에도 친정 바로 옆에 집을 지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숙인 청풍 김씨 묘지명><sup>12)</sup> 김씨가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살았다고 해서 이것을 17세기적인 현상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18세기 중반에도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범조(1723~1801)의 며느리 채씨(1752~1780)는 정약형과 혼인했으나 아이들을 연달아 잃은 뒤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 정범조는 이 며느리를 위해서 쓴 행록에서 혼인한 지 4년 만에 시집으로 데려왔다고 적고 있다.<며느리 채씨 행록><sup>13)</sup> 홍양호(1724~1802)는 <이씨 집안에 시집간 딸 제문>에서 딸이 21살에 요절했는데 친정에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고, 21년 동안 한 번도 슬하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sup>14)</sup> 홍양호의 며느리 과평 윤씨는 혼인

12) 김창흡, <淑人淸風金氏墓誌銘>, 삼연집 권 27, 『한국문집총간』 166, p.7.

13) 정범조, <子婦蔡氏行錄>, 해좌집 권36, 한국문집총간 240, p.147.

14) 홍양호, <哭亡女李氏婦文>, 이계집 권24, 『한국문집총간』 241, p.436.

한 지 11개월 동안 시부모 곁에 있는 것은 십 수 일이었다고 적고 있다. (<큰며느리 파평 윤씨 제문>)<sup>15)</sup> 송환기의 경우 손자며느리가 혼인한 뒤 계속 친정에서 머물다 병이 들어 죽고, 증손녀도 친정에서 죽었다.(<맡손자며느리 맹씨 제문>)<sup>16)</sup> 그래서 결혼한 뒤 시집에 가지 못하고 죽은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이다. 안정복은 18세에 이인운과 결혼한 의령 남씨 묘지명에서 남씨가 결혼한 다음해에 홍역에 걸려 죽었는데 시집 마당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고 전하고 있다.(안정복, <의령 남씨 묘지명 병신년>)<sup>17)</sup> 이상의 경우들은 결혼한 뒤에도 친정에 있었던 것에 대해 부모님을 사랑해서, 또는 몸이 아파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예가 보여주듯 친정부모가 딸이 함께 있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부인은 유인을 하루도 곁에서 떠나보내지 못했으며 잠시라도 떨어지면 반드시 울면서 걱정했다. 유인이 매번 옷자락을 땅에 펼치고 친정에 돌아갈 것을 아뢰었는데, 딸이 간절하고 태도가 온순하니 시부모가 감동하여 허락했다. 중장은 유인을 얻은 뒤 내조를 받으며 나를 좇아 공부했다. 유인이 항상 공부하기를 권했으며 일에 따라 경계하고 바로잡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어릴 적 부모를 여윈 뒤 용인의 한천(寒泉)에 옮겨와 살았는데, 한천은 선산으로 귀락당 부군의 묘가 또 있었다. 계축년(1733) 김부인이 유인을 데리고 와서 의지했는데, 유인이 손수 옷감을 짚으며 중장은 책을 읽었으니 계명시의 남긴 뜻을 깊이 얻었다. 매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읽고 외우는 소리가 마루에 가득했는데, 유인이 듣고 즐거워하면서 거의 날이 가는 것을 잊었다. 1년을 지내고 김부인이 잠시 서울로 들어갈 때 유인이 따라갔다가

15) 홍양호, <哭長子婦坡平尹氏文>, 『이계집』 권24, 『한국문집총간』 241, p.437.

16) 송환기, <祭長孫婦孟氏文>, 성담집 권16, 『한국문집총간』 244, p.369.

17) 안정복, <宜寧南氏墓誌銘>, 순암집 권22, 『한국문집총간』 230, p.257.

유언이 병이 들어 도성의 서쪽 집에서 죽었으니 이는 갑인년(1734) 10월 4일로 겨우 24세였다. 유언은 병에 잘 걸렸는데 병이 나면 스스로 두려워하며 탄식하길,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는 누구를 의지하겠는가?”라고 했는데, 죽을 때에는 그 말이 더욱 슬프고 애절했다. 아, 유언과 같은 사람은 시집간 뒤에도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만하다.<sup>18)</sup>

유언 이씨(1711~1734)는 이조판서를 지낸 이만성(李晩成)의 딸로 1727년 유득양과 결혼했다. 이재가 쓴 묘지에는 결혼한 뒤 시집에서 있을 때 시부모의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 친정어머니 김씨 부인 때문에 남편과 함께 주로 친정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낙행이 쓴 <유언 김씨의 행록><sup>19)</sup>도 이와 비슷한 예를 보여준다. 유언 김씨는 김민행의 딸로 이실보와 결혼했는데, 김민행이 죽은 뒤 친정어머니가 딸들을 가까이 두고 싶어해서 유언이 시집과 친정을 오가며 보살폈다.

이와 조금 다른 이유로 친정을 돌본 경우도 있다. 이재의 사촌 제수인 안동 김씨는 김시발의 딸로 이이명의 손자인 이유의 부인이다. 이재는 안동 김씨를 위해 쓴 묘지에서 친정아버지가 정치적인 문제로 옥에 갇히게 되자 김씨는 직접 절구질을 하며 옥바라지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사촌동생의 아내 유언 안동 김씨 묘지><sup>20)</sup> 이외에도 친정 제사나

18) 이재(李緯), <從妹孺人李氏墓誌>, 『陶菴集 권45, 한국문집총간 195, pp.442~444. “金夫人於孺人, 未忍一日離膝下, 作違必涕泣思之. 孺人每敷衽告歸, 辭懇而容婉, 舅姑感而許之. 仲長既得君爲內助, 仍從余遊, 孺人嘗勸之學, 隨事規正, 又非一二. 余孤露以來, 移寓龍仁之寒泉, 寒泉即先壘而歸樂府君之墓亦在. 歲癸丑, 金夫人携孺人而來依焉, 孺人手紡績, 仲長讀書, 深得雞鳴詩之遺意. 每晨夕講誦之聲盈堂, 孺人聞而樂之, 殆忘日月之逝. 居一年金夫人薄入洛下, 孺人隨之, 偶感疾死於城西寓舍, 是甲寅十月四日也, 得年僅二十四. 孺人常善病, 病則自危而歎曰, 吾則死, 吾母疇依. 及臨絕, 其言益悲切. 嗚呼! 若孺人者, 可謂已嫁而孝不衰於父母者矣.”

19) 김낙행, <孺人金氏行錄>, 九思堂先生續集 권3, 한국문집총간 권222, p.499.

친정 부모의 장례에도 적극적으로었던 예가 보인다. 이민보는 정경부인 이씨의 묘지에서 이씨가 ‘따로 재물을 저축’하였다가 부모님 묘에 비석을 세우고 재사를 세웠으며 부모님 기일에 제수를 갖추어 보냈는데 반드시 시집보다 덜하도록 해서 부모만 위한다는 혐의는 피했다고 한다.(〈정경부인 이씨의 묘지명〉)<sup>21)</sup> 이의현은 둘째누나(1656~1740)는 홍덕보와 결혼했는데 이의현이 귀양가자 4년간 친정 재사를 지냈다. 이의현은 멀리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서 서울 집에서 동서로 살며 가까이 지냈고, 지방으로 갈 때는 따라갔으며, 만년에 시골로 물러났을 때에도 이웃 마을에 살며 계속 왕래했다고 전하고 있다.<sup>22)</sup>

이상의 예들은 18세기에도 친영이 시행되지 않았으며 친정과의 유대가 강한 경우를 보여준다. 이때 친영은 의례상의 절차만이 아니라 결혼 뒤에 시집을 중심으로 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자료의 비중으로 보면 전체 자료 가운데 시집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sup>23)</sup> 또한 친정의 재산을 나누어 받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때 여성들은 친정 재산을 사양한다. 즉 “친정부모의 재산은 출가한 딸이 가져서는 안된다”(이재형, 〈생모 유인 허씨의 가장〉)<sup>24)</sup>고 하며 굳이 사양하는 것이다. 남유용은 풍산 홍씨 묘지명에서 풍산 홍씨가 굳이 친정 재산을 받지 않은 일을 전하고 있다. 풍산 홍씨의 오빠인 낙정공이 집안 재산을 나누어 주자 풍산 홍씨가 슬프게 울면서 집안이 원래 가난한데 지금 다시 그것을 나누면 장차 조상들을 어떻게 섬기겠느냐고 하면서 굳이 돌

20) 이재, 〈從弟婦孺人安東金氏墓誌〉, 도암선생집 권46, 한국문집총간 권195, p.466.

21) 이민보, 〈貞敬夫人李氏墓誌銘〉, 풍서집 권9, 『한국문집총간 권22, p.473.

22) 이의현, 〈仲姊孺人墓誌〉, 도곡집 권18, 한국문집총간 권181, p.219.

23) 물론 이 경우에도 친영을 시행했다기보다는 그 여부를 알기 어렵게 서술한 것일 수도 있다.

24) 이재형, 〈生親孺人許氏家狀〉, 『송암집 권5, 한국문집총간 179, p.468.

려주려고 했으나 사양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장조카 중구가 태어났다. 그러자 따로 문서를 만들어 나누어 준 말을 중구에게 들렸다는 것이다.<정부인에 추증된 풍산 홍씨 묘지명><sup>25)</sup> 이러한 일들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낼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딸들이 재산을 사양하는 이유는 친정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곧 친정 가문을 유지하는 것이고 친정 가문이 유지될 때 시집에서의 자신의 입지도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사실들을 놓고 판단해 보면, 성호나 순암과 도암이 언급한 대로 18세기에도 친영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친정과의 유대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여성담론은 여성이 시집에 가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쪽으로 진행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원진이 집안 여성들에게 준 여훈서 중의 하나로 시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쓴 것이다.

며느리 된 자가 일단 그 시부모 보기를 자기 친부모와 나란히 하지 않기 때문에, 시부모의 마음을 거꾸로 헤아린다. 그 가르침과 책망이 자애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실을 책망하는 데서 나왔다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쌓아 이에 점점 더 거스른다. 마침내 남편으로 하여금 의혹을 품어 효를 잃게 하고, 시부모가 격하여 자애로움을 버리게 만들고, 온 집안이 반목하여 윤리를 상하고 은혜를 그르치기에 이른다. 이 모두가 며느리의 죄다. 비록 집에서 쫓겨난다 한들 속죄할 수 있겠는가.<sup>26)</sup>

25) 남유용, <贈貞夫人豊山洪氏墓誌銘>, 『뇌연집 권20, 한국문집총간』 217, p.427.

26) 한원진, 한씨부훈, <事父母舅姑章第二>, 韓元震, 南塘集 卷26, 『한국문집총간』 202, pp.67~68. “爲婦者既視其舅姑, 不比於生我之父母, 故以此反度舅姑之心, 疑其教訓責罰, 不出於慈愛而出於督過, 懷念蓄懟, 愈肆悖逆, 遂使其夫有感而失其孝, 舅姑有激而捐其慈, 一室勃暎, 傷倫賊恩, 此皆婦之罪也. 雖其斥黜, 可勝贖哉.”

한원진은 시부모와 며느리의 갈등이 남편과 부모의 갈등에 이르게 하고 결국은 온 집안이 반목하게 만드는데 그 원인은 시부모를 친부모와 똑같이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모두가 ‘며느리의 죄’라고 보았다. 이 기록은 조선시대의 며느리들은 시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종의 선입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위 기록이 보여주는 바를 미루어 보면 며느리와 시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집안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한 모습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담론은 시집의 인정을 얼마나 받았는가, 시부모를 얼마나 잘 모셨는가를 계속 덕목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김창흡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규방의 일을 말할 때 사가(私家)의 집안 가득한 명예를 얻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좋다’는 한 마디를 얻는 것만 못하다. 이를테면 공인이 시집에서 얻은 것은 알아줌이 깊고 명예가 넉넉하여 친부모가 다 알지 못한 것에 이를 정도이다. 그러니 죽어도 남은 영예가 있어 가히 저승에서 평안함을 얻었다고 할 만하다.<sup>27)</sup>

위 기록의 주인공인 공인 이씨(1692~1719)는 간재의 딸이자 김태보의 부인이다. 여기서 김창흡은 규방에서 가장 큰 명예가 시어머니의 인정이라고 하였다. 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는 뜻이며, 이런 맥락에서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범조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가정을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며느리에 대해 엄격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혹독한 시집살이의 단면을 볼 수 있다.

27) 김창흡, <恭人李氏墓誌銘>, 『삼연집』습유 권 25, 『한국문집총간』 167, p.136, “故以閨閣言之, 得私家滿室之譽, 不如得舅姑一可字. 如恭人所得乎舅家者, 知深而譽洽, 殆父母之所未悉. 則沒有餘榮, 其可以獲寧泉扁矣. 亦何恨年促而福壽乎.”

집안 다스리기를 매우 엄하게 하여 부녀는 웃지 못하게 하고 낮잠을 자기 못하게 하였으며, 남녀 종이나 어린아이가 감히 방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큰며느리 정씨는 매우 조심성이 많고 순박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으면 대번에 엄준한 말로 꾸짖어 조금도 용서치 않으셨다.<sup>28)</sup>

정범조의 어머니인 신씨부인(1697~1775)은 신필양의 딸이었는데 엄격하게 집안을 다스렸던 것으로 보인다. 집안의 부녀들에게 웃지도 못하고 낮잠도 자기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큰며느리 정씨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성 자신은 시집살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으며, 여기서 친정과 시집의 거리는 어떻게 나타날까? 시집살이 민요나 규방가시는 여성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다음 장에서는 시집가기 전부터 시집간 뒤까지 여성이 스스로 기록한 <즈기록>을 대상으로 친정과 시집의 거리, 시집살이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 4. 여성이 재현한 시집살이와 친정, 시집의 거리

##### - <즈기록>을 중심으로

<즈기록>은 풍양 조씨(1772~1815)가 1792년에 기록한 자전적 기록으로 “혼인한 뒤로부터 부자가 병을 앓던 시말과 일을 당하기까지 대강을 기록”한 것이다. 풍양 조씨 집안은 조선후기의 명문가 중 하나였으나 할

28) 정범조, <돌아가신 어머니 정부인 행장>, “壺政甚嚴, 婦女毋得嬉笑, 毋得當晝寢, 婢僕襦褌兒, 毋敢入房內. 長子婦鄭氏, 頗謹醇而微有不可意, 輒峻訶不少貸.”

아버지 조상수가 조도보의 서자인 까닭에 명문의 주변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조감은 1775년 무과에 급제해서 현감을 지냈다. 어머니는 하명상의 딸로 조감의 둘째부인으로 들어와서 풍양 조씨의 언니, 풍양 조씨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으나 일찍 죽고, 이후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출산하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일찍 죽었다.<sup>29)</sup>

<조기록>의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조씨의 친정은 서울 쌍동에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시집간 뒤 약이나 의원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즉각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등으로 미루어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서를 지낸 종숙부, 봉조하를 지낸 종가의 종숙모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당대의 명문이었던 종가와 유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기록>에 의하면 판서를 지낸 종숙부가 조씨의 할머니에게 ‘감격지’ 않은 행동을 해서 서운해 했다든지, 이후 종숙부가 귀양가 있을 때 마침 조씨의 어머니 하씨가 친정에 갔다가 귀양와 있던 종숙부에게 자주 글월로 안부를 전하고 제철 과일과 아름다운 반찬으로 정을 표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곡진하게 해서 종숙부가 감격해서 새롭게 후한 말씀과 도타운 정으로 친애하기 시작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그렇다.

조씨는 15살에 김기화(金基和, 1772~1791)에게 시집갔다. 김기화는 청풍부원군 김우명의 후손으로 할아버지 김도홍이 무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으나 아버지 김재묵은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김기화는 과거 준비를 해서 집안을 일으킬 기대를 받았으나 시험에 한 번 응시한 뒤 병이 들어 일찍 죽었다. 김씨 집안은 조씨가 시집갈 당시 시골에 전장을 두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기록>에 다른 수입에 대

29) <조기록>의 서지 및 풍양 조씨에 대해서는 박옥주, 「풍양조씨부인의 <조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집, 2001 참조.

한 이야기는 없고 시아버지가 추수로 인하여 시골로 갔다는 언급(79면)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

조씨의 <즈기록>에서 친정 집안, 친정 부모, 어린시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 뒤 시집가서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조씨는 먼저 자신의 친정 가문에 대해 “대대 충효 가문이요, 법도 있는 집안(7면<sup>30</sup>)”이라고 하고, “우리 어머니는 명문가의 후예로 태어나시고 덕이 있는 집안에서 자라시어”(14면)라고 하여 친정 가문이 좋은 가문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시집에 대해서는 “다른 집안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정”(56면)이라고 하고 “가정이 화평하고”라는 언급을 하고 남편 외에는 다른 형제가 없어서 가풍을 물어볼 곳이 없어 적막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친정에 대해 충효 가문이라거나 법도 있는 가문이라고 말하면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시집간 뒤 시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시부모님께서 왔거나 늙거나 적막하신 까닭에 갓 결혼해서부터 오랫동안 친정에 돌아가 인사를 못하고 시부모를 옆에서 모시기를 자주 하였다.”(56~7면) 조씨 자신이 지극한 슬픔을 품고 있어서 자신의 방으로 물러 나와도 재미없고 우울하고, 시부모의 슬하가 적막한 것을 생각해서 신혼초부터 삼시 문안과 아침 저녁 인사만 차리지 못하고 아침 문안 뒤에 종일 모시고 앉아서 서너 차례 밥 먹는 외에는 곁을 비우지 않았다고 한다. 가끔 친정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남편이 장모 사랑을 받지 못해 왕래가 드물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아니 계시니 장모의 중요한 사랑을 모르고 왕래가 드물며 자취가 서먹하니 남편이 마음속으로 몹시 재미가 없고 애달아 간간이 한탄할 때가 많았다.”(62쪽)고 기록하고 있다.

30) 국립도서관 소장본 <즈기록>의 면수이다. 원문은 현대역해서 인용한다.

시집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고 남편 김기화가 과거시험을 보고나서 조씨의 친정 왕래가 전에 비해 잦아진 것으로 보인다. 친정에 간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일년에 한두 번은 친정에 가서 보름 정도 있다가 온 것으로 보인다.<sup>31)</sup>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정리하면 무신년(1788) 10월 6일~19일, 경술년(1790) 10월 3일~23일, 신해년(1791년) 1월 3일~27일이다. 그 외 친정과 기별을 전하는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친정아버지도 수시로 왕래하고 있다. 남편의 김기화의 경우 처가에서는 거의 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기화가 처가에 간 것은 병이 깊어져 조씨가 시부모에게 친정으로 가기를 청해서 간 것과 위독해져 다시 피접을 간 것 두 차례이다. 김기화가 처음 처가에 가서 목계 되었을 때 “남편이 일찍이 하루도 목은 적이 없다가 달포나 목는 것을 만족스럽고 다행하게 여겨”(89면) 조씨의 언니가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김기화가 처음 처가에 갈 때는 혼자 갔는데 이때 조씨가 시어머니에게 “제가 시집와서부터 어른만 모실 뿐 몹시 고단했는데 이제 부자(남편) 다만 내 시비 한 사람과 남의 집에서 서먹한 적적함을 당하니 가히 값은 줄”(88면)로 생각한다고 하여 시어머니와 한바탕 웃는다.

이상에서 보듯 풍양 조씨는 시집간 뒤 바로 시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자신의 혼례에 대해 “병오년 시월에 예를 드리고 규구를 좇아 존문에 들어가 뵈었다. 시조부모 시부모께서 모두 계시어 복당과 안방이 다 족하시니 인가의 지극한 즐거움이였다.”(56면)고 기록하고 있는데, 혼례를 한 뒤 곧 시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년에 한두 번 정도 보름 이상 친정에 가서 머물렀으나 남편 김기화는 함께 가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조씨는 친정어머니가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애달아하기도 한다.

31) 남편의 병세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친정에 가기 전과 다녀온 뒤의 병세의 차이를 묘사할 때만 친정에 다녀온 것을 기록했을 수도 있다.

풍양 조씨도 친정에 가기는 했지만 생활 자체는 시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김기화의 집이 부모, 조부모 외에는 다른 식구가 없어 모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풍양 조씨의 언니는 김승이라는 선비에게 시집갔는데 거의 친정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풍양 조씨는 “언니가 신혼으로 인하여 시대 왕래를 자주 하시니 갑자기 몸이 기떨 데가 없는 것처럼 …… 견디기 어려웠다. 다행히 언니가 제삼부<sup>32)</sup>의 한가함을 얻어 불과 수삼 일씩 머물러 오시니 그런 천만다행이 어디 있으리오.”(53면)라고 하였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낸 뒤에 풍양 조씨는 김기화와 결혼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신혼으로 인해 ‘시대 왕래’를 자주 한다는 언급과 셋째며느리로 한가함을 얻어 친정에 자주 온다는 것이다. 시대 왕래라는 말은 친정을 중심으로 시대를 오간다는 의미로 보이고, 셋째며느리의 한가함이라는 것은 아직 시집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지 못해서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자매라도 시집 안에서의 위치나 시집의 형편에 따라 친정, 시집과의 관계 맺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시집과 친정에 대한 풍양 조씨의 태도는 어떠한가?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풍양 조씨는 친정에 대해서는 대대 충효가문이요, 법도 있는 집안으로 묘사한 데 비해 시집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이 없다. 남편이 아프기 전 시집 생활에 대한 기록에서는 시집살이를 고되게 했다거나 일을 많이 했다는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이 아픈 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풍양 조씨는 남편이 처음 병이 들었을 때 본래 검박하고 몹시 절약하는 시부모가 의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육즙 같은 것으로 원기를 보충시키지 않고 흰 밥, 미역국만 최고로 알고 이것으로 원기를 보충시키려 한 것을 이야기한 뒤 한마디로

32) 제삼부는 第三婦 즉 셋째며느리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곳 가정과 규모는 남의 집과 다른 점이 많았다.”(76면)고 적고 있다. 그 뒤로 김기화는 계속 병을 앓는데 병이 더해진 것은 추운 겨울에 찬 방에서 떨며 책을 읽다가 시어머니가 끓여준 간식을 먹고 체증이 겹쳐서였다. 이에 대해 풍양 조씨는 나서 다시 심하게 앓게 된다. 풍양 조씨는 시부모나 조부모가 찬 것에 익숙하고 한겨울에도 따듯함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렇게 찬 데서 추위를 막으려고 많이 먹어 체한 것이 빨리 죽는 말미가 되었다고 하였다.(80~81면) 병이 계속되자 친정에서 양즙을 보내 주고, 조씨 자신도 치마를 팔아 약을 지어 남편에게 먹인다. 그러나 이를 안 왕대인이 양즙은 청보하는 것이니 부질없이 먹지 말라 하고 처가 것을 어찌 그리 좋아하느냐고 하니 남편도 다시는 먹지 않는다.(83면) 그러나 병이 위독해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의원이나 의약 등 친정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는다. 친정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반면 시집은 경제적 여유가 없이 절약해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즈기록>은 18세기 서울에 살았던 한 양반 집안의 딸이 결혼한 뒤 시집에서 어떻게 생활했고, 친정과 어느 정도의 유대를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앞서 보았듯이 결혼한 뒤에는 시집에서 생활했으나 친정과의 유대는 긴밀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소식을 전한다. 웅서 간의 관계도 긴밀하여 김기화가 병세가 나빠져 잘 먹지 않으려 하자 장인이 직접 떠먹이기도 한다.

풍양 조씨의 <즈기록>은 결혼한 여성이 친정과의 유대를 유지하고, 친정에 대한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예를 보여준다. 또한 병을 대처하는 방식에서 시집 식구와의 견해 차이를 기록해서 시집의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시집과 친정의 가정과 규모가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풍양 조씨의 이러한 지적은 여성이 시집과 다른 목소리를 낸 예를 보여준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여성이 가부장적인 억압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집간 여성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시집의 정체성에 포개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풍양 조씨의 경우는 친정의 형편이 시집보다 나았던 경우에 해당된다. 즉 위급한 상황에서 풍양 조씨는 친정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김씨 집안에서는 처가 것을 좋아한다는 편찬을 주어 김기화가 처가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지 않기에 이른다. 이처럼 시집과 친정 사이에는 은근한 긴장이 깔려 있다. 따라서 이와 역전된 관계에서는 또 어떤 관계 양상이 드러날지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이 글은 여성사의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로 친영제의 정착에 주목하고 18세기에 친영이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실제 여성들의 삶은 친영제의 정착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핀 것이다. 이를 위해 18세기의 대표적인 예서를 통해 친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살피고, 이것이 실제 여성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여성을 대상으로 쓴 행장, 묘지명, 제문과 여성 자신이 기록한 삶을 통해 살펴보았다.

18세기의 대표적인 예담론에서는 친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친영을 지키려 한다면 도시에서나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친영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들며 번거로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기서 예를 지킨다는 것이 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들에서는 여성들이 결혼한 후에도 친정을 근거로 생활하거나 친정과의 유대를 긴밀하게 하고 있는 예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시집에 순종하는

며느리를 만들려는 훈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여성의 규범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다룬 자료들이 18세기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자료들에서 나온 사실 사실들을 근거로 앞서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기에 와서 가부장제가 강화되어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그 이유는 여성담론의 방향이 시집에서의 인정, 시집살이에 대한 인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친영의 정착 여부와 가부장제의 정착 여부를 그대로 연결시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17세기 까지 친영은 사대부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의식으로 생각되었으나 18세기에 와서는 친영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경제적인 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혼례가 치러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 와서는 더 이상 친영이 혼례의 핵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셋째, 친영이 그대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친영이 표방한바 남자가 여자에 우선한다는 원리는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즈기록>의 경우 시집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내는 방식은 직접적이거나 바로 그 현장에서 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정도의 목소리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친정이 시집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월했다는 것과 일정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논의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한국문집총간』

이익, 『禮式』, 이대도서관소장본

이재, 국역 『사례편람』 권2, 우봉이씨대종회, 1-254면.

- 김경미,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 『동양고전연구』 25, 2006, 262-292면.
- 김소은, 「18세기 영남 사족의 일상과 생활의례」, 『사학연구』 88, 2007, 185-228면.
- 김혁, 「조선시대 혼서의 서식 변화를 통해서 본 혼례의 양상」, 『영남학』 13호, 511-566면.
- 박옥주, 풍양조씨부인의 <즈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3집, 2001, 165-188면.
- 이순구,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한국사』 31, 1998, 207-230면.
- 장병인,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 행태」, 『朝鮮時代史學報』 45, 2008, 219-261면.
- 장병인,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 『역사와 현실』 58, 2005, 259-293면.

ABSTRACT

Women's Relationship to Their Parental Home and Their Husbands'  
Home in the 18th Century of Chosun Dynasty

Kim, Kyoung-Mi

This paper tried to reveal how Sadaebu of the 18th century accepted Chinyoungrye(親迎禮) and how this perception was reflected in women's lives by analyzing records of those days such as haengiang(行狀) which were kind of biographies of Yangban, jemun(祭文), epitaphs inscribed on tombs, and women's autobiographical writings. Focussing on the women's respective relationship to their parental home and their husbands' home, I wanted to show how norms of those days attempted to define women's identity, and how women themselves saw what they were. Scholars who developed the discourse of 예(禮) at those times mentioned that Chinyoungrye was rarely practiced in ordinary lives, and only in the royal family it was followed because of high cost and inconveniences. Generally young couples started their marriage life in brides' parental home. And there were found many cases where only wives kept to live in their parental home.

On the other hand, the records which had intended to afford moral lessons to women constructed women's lives focussing only on their husbands' home. Sadaebu tried to discipline women to obey to the will of their in-laws and to make this discipline as a norm for women.

Through this study I found that patriarchal system of family based on Jongbub(宗法) was not thoroughly established in the 18th century and two conflicting tendencies co-existed in women's lives. This argument was made based on yangban(兩班), the aristocratic class of those times. Therefore more investigation of individual cases of ordinary lives is needed for more extensive and accurate picture of women's lives in the 18th century.

**Key Words** Chinyoung, haengjang(行狀), epitaphs(墓誌銘), jemun(祭文), parental home, husbands' home

논문투고일 : 2009. 3. 31

심사완료일 : 2009. 4. 29

게재확정일 : 2009. 5. 15